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·업무상배임·공갈미수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집단·흉기등상해)·상해·간통

[서울중앙지방법원 2013. 4. 23. 2012고단5807,2013고단186(병합)]



【전문】

【피고인】 피고인 1(대법원판결의 피고인) 외 2인

【검 사】김봉현, 이철호(기소), 김준섭(공판)

【변 호 인】법무법인 우송 외 1인

【주문】

]

피고인 1을 징역 4년에, 피고인 2를 징역 2년에, 피고인 3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. 다만, 피고인 3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.

[이유]

]

[이유]

]

【이유】

1

[이유]

1

[이유]

]

[이유]

]

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